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제2019-제23호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신청 안내

우리 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2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2019년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 계획

1. 목적

-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

2. 개요

가. 법적 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음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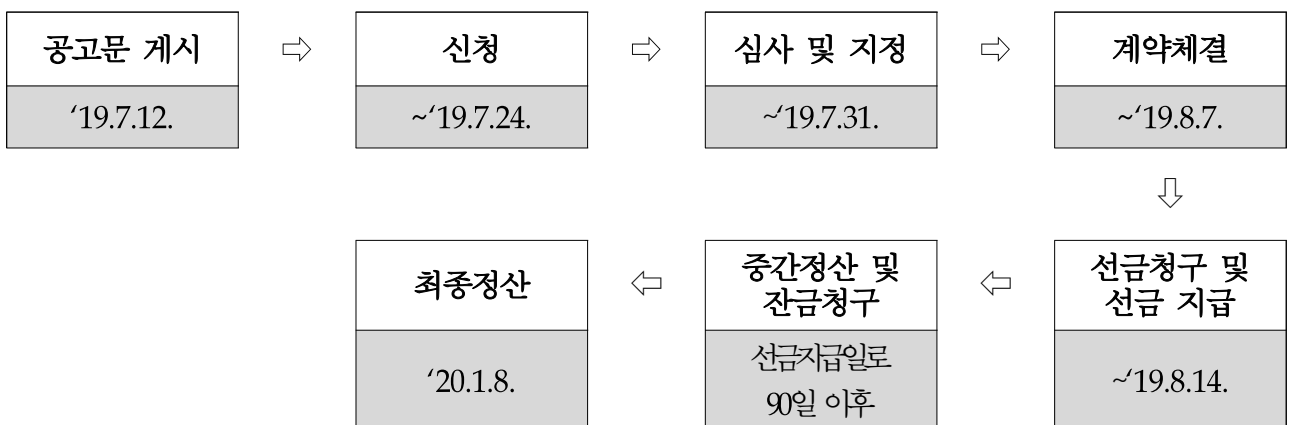
나. 주요 내용

-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 우대지역 : 강원·경기·인천, 광주·전남, 울산·경남
- (신청 기간) ‘19.7.12.(금) ~ ‘19.7.24.(수)
- (신청 방법) 붙임의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이메일(med_nibplst@nibp.kr) 제출
※ 제출 관련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02-778-7564)

- **(업무)** 타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한 윤리위원회 업무
 - (심의) 연명의료 관련 환자, 환자 가족, 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 및 담당 의사가 이행 거부 시 담당 의사의 교체에 관한 사항 심의
 - (상담) 연명의료 관련 환자나 환자 가족 대상 상담
 - (교육) 의료기관 내 종사자 대상 의료윤리 교육 실시
 - (기타) 통계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평가 및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현황, 정보처리 시스템 서식 작성 및 오류 건수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 **(지원 기간)** ‘19.8.1. ~ ‘19.12.31.(5개월)
- **(지원내용)** 사업비 2,500만원* × 3개소 (총 7,500만원)
 - * 보건복지부 사업비 1,600만원은 공용윤리위원회 전담인력 인건비로 활용하며, 홍보 및 교육 활동,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출장비, 소모품비 등은 운영비 900만원으로 사용

다. 추진 일정

○ (주요 일정)



○ (세부 일정)

- 공고문 게시 : 7월 12일 (금)
- 접수 : ~ 7월 24일 (수)
- 심사 및 지정 : ~ 7월 31일 (수)
- 계약체결 : ~ 8월 7일 (수)
- 선금청구 및 선금지급: ~ 8월 14일 (수) (사업비의 40%를 청구)
- 중간정산 : 선금의 50% 이상 집행 후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중간정산보고서 제출
- 잔금청구 : 선금 지급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중간 정산보고 후 잔금청구
 - * 잔금은 연명의료관리센터 사정에 따라 2회 나눠서 지급할 수 있음
- 최종정산 : 2020년 1월 8일 (수)까지 위탁정산기관에 최종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